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제67차 이사회 의사록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회의 소집 통보일자 | 2013년 04월 11일 | |
| 이사정수 | 15 | 재적이사 |

1. 일시 : 2013년 04월 17일(수) 14:00-15:00

2. 장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3. 참석

| 구 분 | 인원 | 성 명 | 비고 |
|------|----|---|----|
| 참석이사 | 10 | 김영춘, 전종운, 장영덕, 변효근, 유지언, 이태영, 정병조, 김상현, 김주식, 정재위 | |
| 불참이사 | 4 | 김영주, 김풍기, 성낙승, 박태원 | |

4. 보고사항

- 제1호 전 회의록 결과보고
- 제2호 학교법인 주요업무보고
- 제3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

5. 의결안건

- 제1호 금강대학교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- 제2호 학교법인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- 제3호 개방감사 선임의 건
- 제4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|
| 정병조 | 26 196 3 | 정세원 | 16 개 9 | 한인수 | 한인수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|

6. 회의내용(회의록 별첨)

가. 보고사항

- 별첨 내용과 같이 접수하다.

나. 의결내용

- 별첨의 회의록 요지 내용과 같이 의결하다.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3년 04월 17일

| | | | |
|-----|-----|----|-----|
| 이사장 | 김영춘 | | |
| 이사 | 전종윤 | 이사 | 정병조 |
| 이사 | 장영덕 | 이사 | 성낙승 |
| 이사 | 변효근 | 이사 | 김상현 |
| 이사 | 김영주 | 이사 | 김주식 |
| 이사 | 김풍기 | 이사 | 정재위 |
| 이사 | 유자언 | 이사 | 박태원 |
| 이사 | 이태영 | 감사 | 한인수 |

위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확인 함.

2013년 04월 17일

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

[제67차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요지]

1. 일 시 : 2013년 04월 17일(수) 14:00-15:00

2. 장 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3. 참석 : <참석이사> 10명

 김영춘, 전종윤, 장영덕, 변효근, 유지언, 이태영

 정병조, 김상현, 김주식, 정재위

 <참석감사> 1명 한인수

 <불참이사> 4명 김영주, 김풍기, 성낙승, 박태원

 <참석 교직원 및 보고인> 6명

 엄성문 법인사무처장, 최재근 법인총무과장, 권정만 법인팀장

 서문성 기획관리처장, 조성환 교학지원처장, 장민호 대외협력처장

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므로 본 법인 정관

 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

 선포하고 제6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.

4. 보고사항 : 제67차 이사회에서는 별첨의 ① 전회의록 결과 보고,
 ②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, ③ 금강대학교 주요업무
 보고를 하였다.

5. 심의안건

- 제1호 금강대학교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- 제2호 학교법인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- 제3호 개방감사 선임의 건
- 제4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정병조 | 전재위 | 장재우 | 한인수 |
|-----|-----|-----|-----|

6. 회의내용

제67차 학교법인 이사회가 2013년 0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강대학교에서 김영춘 이사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이날 이사회에서 김 영춘 이사장은 재직이사 15명 중 10명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였다. 그리고 위 4번의 ①보고사항을 마치고 본 회의 의안인 위 5번의 심의안건을 다룬 후 위 4번의 ②, ③의 보고사항을 접수 한 후 회의를 마쳤다.

7. 의결내용

<제1호> 금강대학교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
학교법인 한인수 감사 및 이태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04억 7,580만원을 2012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으로 통과하였다.

<제2호> 학교법인 2012학년도 결산(안) 보고 및 심의 건

학교법인 한인수 감사 및 이태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74억 5,102만원을 2012학년도 학교법인 결산으로 통과하였다.

<제3호> 개방감사 선임의 건

학교법인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
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통과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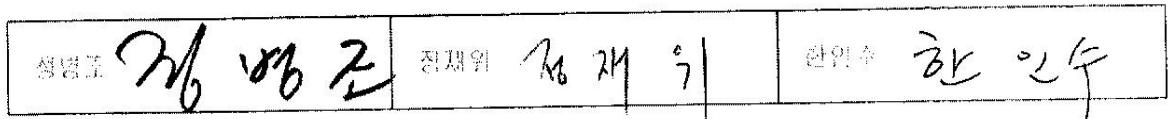
| 신임 개방 감사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성명 | 생년월일 | 경력 | 임기 |
| 인 형 무 | 1943.6.25 | 현 변호사 및 세무사 | 교과부 승인일로부터 3년 |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성명조 36 86 2 | 정재위 정재우 | 한인수 한 인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
<제4호>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
 학교법인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
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통과하였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-|---|--|
| 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 제5조(정관의 변경)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사립학교법 제45조(2012.1.26) 개정에 따른 관할청보고 사항 반영 |
| 제33조(해산)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| 제33조(해산)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| 용어의 통일 |
| 제3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 | 제3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 | 용어의 통일 |
| 제35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제35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 |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개정 반영 |



| | | |
|--|--|---|
| <p>제36조(임면)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이사장이 계약제로 임면한다. 다만, 교원의 신규 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처음 2년의 기간으로 계약임용하며 이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.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따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수 정년(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)까지 2. 부교수 5년 이내 3. 조교수 4년 이내 4. 전임강사 2년 이내 < 삭제 > | <p>제36조(임면)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이사장이 계약제로 임면한다. 다만, 교원의 신규 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처음 2년의 기간으로 계약임용하며 이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.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따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수 정년(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)까지 2. 부교수 5년 이내 3. 조교수 6년 이내 | <p>고등교육법 제 14 조 (2012.1.2 6.) 개정에 따른 변경</p> |
| <p>제38조(휴직의 사유)</p> <p>8.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</p> | <p>제38조(휴직의 사유)</p> <p>8.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</p> | <p>용어의 통일</p> |
| <p>제49조(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</p> <p>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되, 교무처장으로 한다.</p> | <p>제49조(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</p> <p>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되, 교학지원처장으로 한다.</p> | <p>용어의 통일</p> |
| <p>제72조(법인 사무조직)</p> <p>②법인사무처에는 기획·관리담당을 두며 담당관은 참사로 보한다.</p> | <p>제72조(법인 사무조직)</p> <p>②법인사무처에는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국을 두며, 그 외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.</p> | <p>법인 사무 조직의 현 실화 반영</p> |
| |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(제5조, 제33조 ~ 제35조, 제36조 제2항, 제38조 제8호, 제49조 제1항, 제72조 제2항).</p> | |

| | | | | | |
|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
| 성명 | 이명근 | 장서류 | 10개수 | 현금수 | 한 12수 |
|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

- 기타 안건으로

결원 이사의 신속한 충원, 교수들의 책임성 있는 학생 관리 등이 논의 되었다.

-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건

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병조이사, 정재위이사, 한인수감사를 선임하였다.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정병조 36 182 | 정재위 정재위 | 한인수 한인수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